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거듭하여 줄여 부과할 수 없다)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 반
가.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 제1항	500		
나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 제2항제1호	20	40	60
다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7조 제2항제2호	150		
라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 제2항제3호	60		